

선거권 부여 기준

| 근거 규약 및 규정 |

규약 제53조(맹비)

- ② 맹비는 가맹조직이 보고한 단위조직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, 가맹조직은 단위조직이 납부한 맹비를 익월 말일까지 민주노총에 납부한다.

규약 제60조(권리의 제한)

- ① 가맹조직이 맹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누적 미납할 경우,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② 단위조직이 맹비를 3개월을 초과하여 누적 미납할 경우, 그 조직과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.
- ③ 조합원이 단위조직 또는 가맹조직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, 해당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.
- ④ 권리 제한 또는 권리 제한 유보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회계규정 제15조의4(납부유예와 분할납부)

- ① 장기파업 · 정리해고 · 계약해지 · 직장폐쇄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, 맹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.
- ②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당월 정상납부가 어렵거나 기존 미납분이 있는 경우,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.

선거관리규정 제19 · 20조 ((피)선거권)

- ② 제1항의 조합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(피)선거권을 제한한다.
- 3. 선거가 있는 해의 명부확정일 전날 18시까지 맹비 누적 미납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(2020년 3월부터 선거가 있는 해의 9월분까지의 맹비를 대상으로 함). 단, 회계규정 15조의4(납부유예와 분할납부) ①항의 사유로 가맹조직의 규약 · 규정에 따라 납부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와 회계규정 15조의4 ②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, 손배가압류 · 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결정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4. 가입 후 단 한 번도 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위조직 혹은 조합원. 단, 3호의 예외 사항을 준용한다. (피선거권 제한 :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조합원)
- 5. (신설) 재적 조합원수 대비 축소납부한 가맹조직이나 단위조직의 경우 명부확정일 전 6개월분 평균납부인원 만큼 선거권을 부여한다. 단, 3호의 예외 사항을 준용한다. (피선거권엔 적용 안함)
- 6. (신설) 위 5호에 의한 선거인단 구성의 책임은 해당 조직에게 있으며, 선거인단의 명부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직 전체에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 (피선거권엔 적용 안함)

| 규약 및 규정의 요약해석 |

- 76차 임시대의원대회(2023.4.26.)에서 개정된 규약에 의거, 민주노총 맹비 미납 3개월분 초과 시 해당 산별노조(연맹), 단위조직, 조합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 제한이 가능합니다.
- 70차 정기대의원대회(2020.2.17.) 만장일치 의결사항인, 산별노조(연맹)의 단위조직 별 맹비 납부현황 보고 의무화와 2023년 2차 중앙위원회(2023.8.22.)에서 개정된 회계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, 맹비 미납 산별노조(연맹) 또는 산별노조(연맹)의 각기 일부를 이루는 해당 단위조직 및 소속 조합원의 선거권 제한이 가능합니다.
- 9월 30일 18시 기준, 2023년 9월분까지의 맹비 중 4개월분 이상 미납한(즉 6월분까지 완납하지 못한) 단위조직은 민주노총 직선 선거권·피선거권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.(4월 신규조합원은 3개월, 5월 신규조합원은 2개월, 6월 이후 신규조합원은 1개월 이상의 맹비를 내면 됩니다.)
- 단, 미납 조직 중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이거나 손배가압류, 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의 결정을 받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. 또한 미납분에 대해 분할납부를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단위조직 역시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.

○ 선거권 부여의 기본원칙

▶ 맹비를 정상납부한 단위조직은 맹비 납부 인원을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

- 정상납부라 함은, 매월 단위조직의 조합원수에 비례한 맹비가 납부되는 것을 뜻합니다.
- 2020년 3월분부터 2023년 9월분까지 맹비를 3개월분 초과 미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납부한 단위조직은 9월 말 (9/30 18시) 을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 달 분에 납부된 맹비 납부인원으로 선거권 부여 인원수를 산정합니다. (최소한 6월분까지는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되며, 4월 이후 신규가입 단위조직은 해당 가입월 분의 맹비부터 산정)
- 단, 위 인원수가 선거인명부 등록(9/22 등록시한) 선거인 수보다 적을 경우, 그 차이가 미미하다면 명부 등록 선거인 수대로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 ※ 이 때 그 차이가 일용직, 초단시간근무자, 휴직자의 발생 등으로 인한 차이로 불만한 것인지 여부는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의결합니다.

▶ 산별노조(연맹)의 납부유예의 결정과 관련,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거권을 부여합니다

- 장기파업·정리해고·계약해지·직장폐쇄 등의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맹조직의 납부유예 등 결정을 인정합니다.
- 손해배상·가압류, 대량해고, 무노무임 등의 사유로 가맹조직에서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권리제한을 유보합니다.
- 납부유예가 결정된 단위조직은 결정단위에서의 납부유예의 근거를 9/30 18시까지 공문으로 민주노총에 알려야 합니다.

▶ 위 원칙 외 단위조직에 대해

- 선거인명부 등록(9/22 등록시한) 선거인 수와 마지막 (9/30 18시 기준) 으로 납부한 맹비 납부인원 수 차이가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나는 단위조직이 9월 말 현재 선거권 제한대상이 됩니다.

○ 선거권 제한 대상 조직이 해야 할 일

▶ 10.17(화)까지 아래 조치를 취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

- 산별노조(연맹)가 해당 단위조직의 의무금(또는 조합비) 납부유예 의결을 추가로 한 경우 그 의결사항 보고를 공문으로 통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
- 신규조합원 발생으로 인한 맴비납부-명부등록 차이인 경우, 해당 인원수만큼의 맴비 1개월 분을 산별노조(연맹)을 통해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
- 7월 이후 신규가입 단위조직인 경우 명부등록 선거인 수의 맴비 1개월 분을 산별노조(연맹)을 통하여 납부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
-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맴비납부-명부등록 차이인 경우(축소납부), 최근 6개월분 맴비 납부 월 평균 인원수와 명부등록 선거인 수 사이의 차이(인원수)의 6개월치를 산별노조(연맹)을 통해 납부해야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. ※ 4월 신규 단위조직은 3개월 분, 5월 신규 단위조직은 2개월 분, 6월 신규 단위조직은 1개월 분을 납부하면 됩니다.
- 축소납부 조직이 미납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평균 납부인원 수 만큼 선거권이 부여되며, 부여된 인원수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전체 미납분 또는 축소 미납분에 대해 분납개시 시점과 분납기간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

최종 조치

▶ 10.19(목)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

- 손배가압류·대량해고 등으로 가맹조직에서 납부유예 등 결정을 받은 단위조직에 대해 10/19(목)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합니다.
- 위 선거권 부여 조치가 되지 않은 단위조직은 10/19(목) 정기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확인을 거쳐 선거권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됩니다. 단, 명부확정일 전날 (10/24) 18시까지 선거권 부여 조치가 이뤄지면 선거권 제한을 유보합니다.
- 축소납부조직이 10/24 18시까지 미납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선거권을 제한합니다.